제 6 호

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0월 2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세대주 성명 | 성 명<br>생 년 월 일 | 주 소 | 지연 신고사항 |
|---|---|---|---|
| 김** | 김**<br>1957-11-20 |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안1길 | 무단전출 |
| 김** | 오**<br>1958-05-28 |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안1길 | 무단전출 |
| 이** | 이**<br>1965-01-15 |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| 무단전출 |
| 김** | 김**<br>1957-12-10 |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4길 | 무단전출 |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( 담당자 : 임 수정 문의전화 : 063-452-7315 )

2012년 10월 15일

조촌동장